

『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
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
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
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
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장기요양요원들이 종사하는 돌봄 노동은 일상적으로 이용
자에게 밀착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특성 상 성
희롱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.

-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하였고, 안 제10조 제5호에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·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필요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